

평가대행자 ☐ 등록 ☐ 변경등록 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등록	변경
				21일	7일
신청인	기관(업체)명		대표자 성명		
	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
변경내용 및 사유					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☐ 등록 ☐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					
첨부서류				수수료	
1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. 평가대행자 등록증(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	없음	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

